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발 의 자 : 권영식, 박유규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영등포구민이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장려·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안 제4조)
- 재능기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안 제6조)
- 재능기부 참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
 - 안 제4조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으로 법률, 의료, 문화예술, 전문기술, 사회복지,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정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며, 재능기부 관련 단체를 발굴하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함.
 - 안 제7조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능기부활성화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최근 우리구에는 의료, 법률,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능기부라는 전문 봉사활동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말 기준, 우리구에서는 12개 분야 25개의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이 구성¹⁾되어 재능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중으로,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재능기부가 활성화되어 구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활용되고 공공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2016 영등포구 전문봉사단 현황(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
----------	-----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일

발의자 : 권영식, 박유규 의원(2명)

찬성자 : 김재진, 허홍석, 박정자,
유승용 의원(4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민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안 제4조)
- 나. 재능기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다. 재능기부사업 추진(안 제6조)
- 라. 재능기부를 참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4. 28. ~ 5. 4.)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